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2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사유

○ 성주참외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,

○ 운영법인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업안정화 도모와 운영에 활력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농산물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제안근거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
○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

3. 주요골자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,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유통센터 등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

○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간 면제하여 운영법인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초기 운영 안정화에 활력을 주고자 함.

○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물
- 위 치 :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6외 6필지
- 부 지 : 27,704㎡ (8,380평)
- 건 축 물 : 5동 8,141㎡ (2,463평)
- 기계장비 : 비파괴당도선별기 외 24종

○ 사용허가 내역

- 사 용 자 :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
- 허가기간 : 2007. 4. 1. ~ 2010. 3. 31 (3년간)
- 사 용 료 : 86,477,570원 / 최초 1년분 (과표의 1천분의 10)
- 사용료 부과 : 사용자는 당초 3년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요청을 하였으나 1차년도 사업실적에 의거 차후 감면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허가하였음.

○ 2007년 사업실적

- 2007년 사업계획 (매출액기준)
 - 직판 78억원 공판 310억원 ⇒ 계 388억원

- 2007년 사업실적 (매출액기준)
 - 직판 92억원 공판 334억원 ⇒ 계 426억원 (계획대비 110%)

- 2007년 손익분석 (2007.1.1-2007.12.30일까지 결산자료 기준)

(단위 : 천원)

수 입	지 출	경상손실	비 고
\1,606,277	\2,367,881	△761,604	
. 공판 1,336,866	. 인건비 401,210		
. 직판 194,740	. 선별직판비 580,905		
. 기타 74,671	. 상하차운반 508,679		
	. 장려금 567,433		
	. 기타 309,654		

※ 공판수수료 4% (중도매인1.3% 회원농협0.5% 상하차비0.5% 공동법인1.7%)

※ 적자요인 : 사업초기 전문인력 부족과 내부기반 미약

○ 2008년 사업계획

- 적자요인 최소화와 내실경영체제 구축 (주관농협 : 대가농협)
- 연중 가동율 제고 : 취급품목 확대 (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 등)
- 판매(매출)계획 : 430억원 (직판80억원 공판 350억원)

4.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

○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

○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: 2008.1.3 가결

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(안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,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

⇒ **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에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.**
(면제기간 : 2007. 4. 1 ~ 2009. 3. 31)